

안산시 고시 제2024 - 288호

군자주공9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기본계획 변경, 정비계획 수립,
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67번지 일원 군자주공9단지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정비기본계획 변경,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4. 12. 04.

안 산 시 장



□ 2030 안산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(변경)

1. 정비예정구역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번호	정비예정 구역명	위치	사업 방식	면적(㎡)	용도 지역	용적률			건폐율	높이	수립 시기
							기준	허용	상한			
기정	2-5	군자주공9	선부동 967번지 일원	재건축	29,529	3종 일반	230%	250%	280%	50%	-	2022
변경	2-5	군자주공9	선부동 967번지 일원	재건축	29,528.9	3종 일반	230%	250%	280%	50%	-	2022

2. 정비예정구역 결정(변경)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2-5	군자주공9	• 정비예정구역의 면적변경 - 29,529 → 29,528.9㎡ 감) 0.1㎡	• 토지대장을 근거로 정비예정구역 면적 변경

□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

1. 정비사업의 명칭 : 군자주공9 재건축사업

2. 정비구역 및 그 면적

1) 정비구역 결정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①	군자주공9 재건축 정비구역	단원구 선부동 967번지 일원	-	증) 29,528.9	29,528.9	

2) 토지조서

구분	위치		지목	면적(㎡)		비고
	소재지	지번		지적면적	편입면적	
1	선부동	967	대	28,278.9	28,278.9	
2	선부동	967-1	대	580.0	580.0	
3	선부동	967-2	대	670.0	670.0	

3. 토지이용계획

구	분	면 적 (㎡)	구 성 비(%)	비 고
합 계		29,528.9	100.0	
주택용지		26,756.9	90.6	
정비기반시설		2,772.0	9.4	순부담 2,772㎡
	공공시설부지	1,162.0	3.9	기부채납
	도로	1,610.0	5.5	기부채납

4. 도시·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

1) 도로

■ 도로 총괄표

유별	합계			1류			2류			3류		
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
합계	3	2,728.5 (498)	34,380 (1,610)	1	1,400.5 (174)	2,923 (524)	1	472 (183)	7,648 (690)	1	856 (141)	23,809 (396)
광로	-	-	-	-	-	-	-	-	-	-	-	-
대로	1	856 (141)	23,809 (396)	-	-	-	-	-	-	1	856 (141)	23,809 (396)
중로	2	1,872.5 (357)	10,571 (1,214)	1	1,400.5 (174)	2,923 (524)	1	472 (183)	7,648 (690)	-	-	-
소로	-	-	-	-	-	-	-	-	-	-	-	-

주) ()는 정비구역내 면적 및 연장임

■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구 모					기 능	연장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	
기정	대로	3	5	25~28	집산도로	856	대로1-6	대로1-1	일반 도로	다이아 몬드 광장	건설제1985-399호 (1985.9.17.)		
변경	대로	3	5	25~28	집산도로	856 (141)	광1-1	대로3-11	일반 도로	다이아 몬드 광장			선형변경 (구역내 확폭)
기정	중로	1	16	20~23.5	집산도로	1,400.5	대로3-5	대로1-2	일반 도로	-	건설제1985-399호 (1985.9.17.)		
변경	중로	1	16	20~23.5	집산도로	1,400.5 (174)	대로3-5	대로1-2	일반 도로	-			선형변경 (구역내 확폭)
기정	중로	2	10	15~18	집산도로	472	중로1-13	중로1-16	일반 도로	선일 중학교	건설제1985-399호 (1985.9.17.)		
변경	중로	2	10	15~18	집산도로	472 (183)	중로1-13	중로1-16	일반 도로	선일 중학교			선형변경 (구역내 확폭)

주) ()는 정비구역내 연장임

■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 전 도로명	변경 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대로 3-5	대로 3-5	• 선형변경	•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선형변경(구역내 확폭)
중로 1-16	중로 1-16	• 선형변경	•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선형변경(구역내 확폭)
중로 2-10	중로 2-10	• 선형변경	•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선형변경(구역내 확폭)

5.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

구 분		기준(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)	
		의무대상	소요면적산정방법
관리사무소		50세대 이상	• 10㎡ + (세대수 - 50) × 0.05㎡ • 100㎡ 초과시 100㎡로 설치가능
주민공동시설	어린이놀이터	150세대이상	-
	경로당	150세대이상	-
	어린이집	300세대이상	• 300~600세대 미만 : (0.1 x 세대수)명 이상 • 영유아 1명당 4.29㎡(영유아보육법)
	주민운동시설	500세대이상	•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
	작은도서관	500세대이상	• 33㎡이상, 열람석 6석 이상
	합계	1,000세대이상	• 500㎡ + (세대수 x 2㎡)
근린생활시설		-	• 전용면적 1,000㎡이상인 경우 하역장 설치
경비실		별도의 설치규정 없음	

6. 건축물의 주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건축선에 관한 계획

■ 공동주택용지

가구 번호	위치	구분		계획내용
1	①	용도	허용	• 공동주택 중 아파트 (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) • 부대시설 (주택법 제2조 제13호) • 복리시설 (주택법 제2조 제14호)
			불허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		건폐율		• 50% 이하
		용적률		• 280% 이하
		높이		• 37층 이하
		건축한계선		•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, 선부광장1로변 10m •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정비계획에 따르며, 보도형 전면공지에는 담장, 간판, 냉난방용 실외기 등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없음

- 주1) 「2030 안산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」 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기준용적률 230%, 향후 사업시행시 인센티브 항목을 적용할 경우 허용용적률은 최대 20%까지 부여하는 조건으로 상한용적률 280% 이하로 계획 수립
- 주2)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(5%), 지능형건축물 3등급(3%), 부설주차장 확보(12%)를 통한 20% 확보할 것
- 주3) 사업시행자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4조제4항에 의거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%를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,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공급할 경우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(300% 이하)까지 건축 가능
- 주4) 상한 용적률 산정시 공공시설 설치 비용의 건축비단가는 건축허가 시점 직전 조달청 ‘주요 시설 유형별 단위당 공사비’를 활용하여 평균 단위당 공사비를 산정할 것

■ 공공시설부지

가구 번호	위치	구분		계획내용
1	①	용도	허용	• 「국토계획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“기반시설”로서 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공·문화체육시설 • 「국토계획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“공공시설”로서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시설 • 「안산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15조의3 제6항에서 정하는 시설
			불허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•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(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)에 포함되는 시설
		건폐율		• 50% 이하
		용적률		• 200% 이하
		높이		• 4층 이하

주) 건축연면적 2,324㎡ 기준으로 그 이상으로 설치 계획할 것

7.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

1) 홍수 등 재해에 관한 취약 요인에 관한 검토결과

검토항목	검토내용	검토결과	환경영향	대책 및 반영 사항	비고
자연 환경	토양포장 우수유출	○	• 기성시가지로 토양포장, 우수유출 등 변동 미비	• 경미하여 별도 대책 필요없음	
	지형변동 및 절성토균형	○	• 기성시가지로 지형변동 미비	• 경미하여 별도 대책 필요없음	
	녹지변동 녹지체계	○	• 기성시가지로 기존 녹지변동 미비	• 경미하여 별도 대책 필요없음	

2)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

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자연환경	• 대상지는 노후화된 공동주택 및 평탄지로 개발과정에서 질/성토에 의해 발생될 자연 및 지형 훼손의 가능성은 없음 • 보존가치가 있거나, 중요성이 있는 수목은 보존 또는 이전	
생활환경	• 자원의 낭비와 건축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고려한 건축물 계획수립 - 공동주택의 수명연장을 위한 구조체, 설비, 내장 및 의장재 분리 - 공간의 가변성과 구성재의 호환성을 확보 • 우수를 이용한 살수, 조경요수 시설과 중수도 설치 • 투수성 포장면적 비율을 높여 우수부하 저감 • 기존건축물 철거시 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별도 대책수립	

3)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

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화재	• 본 건물은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특정장소로서 건물의 특성상 재난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의 우려가 크며, 이에 대비한 피난 설비의 배치, 소화설비와 구조 설비 등 방재에 관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을 보호토록 함 • 신축 건축물의 재료는 불가연선 재료를 사용함 • 방화구획 - 용도별, 면적별, 층별 방화구획으로 구획 - 주차장은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에 의거 완화적용 - 판매시설 부분은 3,000㎡이하 마다 방화구획 함 - 구획에 따른 구조는 법규에 정한 것을 원칙으로 함	

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화재	- 소화방재 계획 - 재난시 최적의 피난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의 최소화 추구 - 화재시 연기의 확산 및 유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연설비 설치 - R형 방재 시스템을 이용한 초기화재 감지 및 소화대책 수립 - 피난계단을 이용한 안전지대로의 피난이 용이하도록 피난 시스템 구축 - 종합 방재 시스템을 이용한 초기 화재 방지 및 소화대책 수립 - 소방설계시 SYSTEM의 결정, 용량산정, 시설 설치등의 설계기준은 국내 소방 법규 및 건축법을 적용하여 설계하며 국내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국제 기준에 맞추어 설계하도록 함 - 지구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	
수해	-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지구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,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,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수립 - 공사중 발생하는 토사 유출량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배수구역별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유출수 중 토사를 침전시킨 후 상등수만 방류토록 계획 - 절토 및 성토면의 활동과 사면안정에 대한 사면치리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절·성토사면에 적정구배를 적용하여 사면의 유실 및 붕괴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 - 강수시 공사중에 발생하는 토사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지작업시 절·성토 사면의 안정을 기하고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비닐 등의 덮개를 설치하고 사면 상·하부에 측구 등의 배수 시설을 설치 - 사업시 시행은 우기를 피하여 절·성토 작업을 시행 - 녹지와 접하여 있는 대상지의 특성상 공사중 강우에 의한 산사태등의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절·성토를 최소화하여 지형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가 없도록 하며 절·성토사면의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	
교통	- 어린이, 장애인 및 노령자를 위한 보행공간 확대 - 보행안전을 위한 보차분리 및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- 주거지역내 자동차 속도 억제 시설 설치 - 재해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 체계 구축 - 단지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고발생시 교통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-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	
범죄 예방	- 각 가정과 경찰서(지구대)와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-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강화 - 범죄 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한 시민 홍보 - 청소년 대상의 범죄예방 홍보교육을 통한 사고 예방 “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(CPTED)” 개념을 단지내 조경 및 공원 계획시 도입하여 놀이터등의 우범지대화 예방	

8.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

사업 시행시	○ 대기질, 소음 및 진동대책 - 사업지구내 공사가 진행될 경우 건설장비의 투입과 토목공사의 진행으로 비산먼지와 이산화질소가 주로 발생됨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공사장 및 진입도로의 주기적인 살수, 차량속도제한, 차량덮개 착용, 세륜세차시 가설방진망 설치 등으로 공사시 저감대책수립 - 소음 및 진동은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건설 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, 공사차량 속도제한, 사업지구 주변 경계부에 가설 방음판넬 설치, 소음 및 진동 발생공사는 가급적 방과 후 및 방 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주변학교의 학습에 영향을 최소화
	○ 보행안전대책 - 사업구역 외곽으로 공사 중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외부 차단함으로 보행의 영향은 없으나, 학생 및 주민 등 보행안전을 위하여 낙하물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 후 사업시행할 계획임 - 등하교 시간 추가로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차량의 진출입시간의 제한을 두도록 함 - 사업지 주변 확폭하여 설치되는 보도는 우선 확보하여 학생들의 보행동선 확보할 계획임 - 공사구간 위험지역 통과시 안전한 차량유도 및 통행로 지정으로 도로상에서 야기되 는 사고위험에 대하여 사전예방 시설물을 설치 - 공사장비 및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요원을 상시 배치하 여 보행안전 도모
사업완료	- 사업지구내 도로변에 가로수와 공원 및 녹지 등에 대기오염물질 정화수종을 선정하 여 식재하고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저감할 계획임 - 사업지 및 학교주변 도로에 규격화된 표지판(주의, 규제, 지시)을 사용 및 설치와 교통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학생 등 보행통행의 안전을 기할 계획임

9. 세입자 주거대책

1) 주거 세입자

사업시행시 대상지내 세입자의 현황 및 의견을 면밀히 파악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 70조에 따른 반환청구권에 대한 대책 수립

2) 상가 세입자

사업시행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4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상가 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

10.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

정비구역 결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

1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

1) 용도지역

■ 용도지역 결정(변경) 고시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	기 정	변 경	변경 후		
합 계		29,528.9	-	29,528.9	100.0	
일반 주거지역	제2종일반주거지역	29,528.9	감) 29,528.9	-	-	
	제3종일반주거지역	-	증) 29,528.9	29,528.9	100.0	

■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위 치	용도지역		면적 (㎡)	용적률 (%)	결정(변경)사유
		기 정	변 경			
-	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67번지 일원	제2종 일반주거지역	제3종 일반주거지역	29,528.9	280% 이하	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

2)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지구명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89	군자주공9	선부동 967일원	-	증) 29,528.9	29,528.9	-	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구분	도면 번호	위 치	변경내용	변 경 사 유
신설	89	선부동 967번지 일원	• 신설 - 면적 : 0 → 29,528.9㎡ 증) 29,528.9㎡	•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구역 신설

3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

- 도로
- 도로 총괄표

유별	합계			1류			2류			3류		
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	노선수	연장(m)	면적(㎡)
합계	3	2,728.5 (498)	34,380 (1,610)	1	1,400.5 (174)	2,923 (524)	1	472 (183)	7,648 (690)	1	856 (141)	23,809 (396)
광로	-	-	-	-	-	-	-	-	-	-	-	-
대로	1	856 (141)	23,809 (396)	-	-	-	-	-	-	1	856 (141)	23,809 (396)
중로	2	1,872.5 (357)	10,571 (1,214)	1	1,400.5 (174)	2,923 (524)	1	472 (183)	7,648 (690)	-	-	-
소로	-	-	-	-	-	-	-	-	-	-	-	-

주) ()는 정비구역내 면적 및 연장임

-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 능	연장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대로	3	5	25~28	집산도로	856	대로1-6	대로1-1	일반 도로	다이아 몬드 광장	건설제1985-399호 (1985.9.17.)	
변경	대로	3	5	25~28	집산도로	856 (141)	광1-1	대로3-11	일반 도로	다이아 몬드 광장		선형변경 (구역내 확폭)
기정	중로	1	16	20~23.5	집산도로	1,400.5	대로3-5	대로1-2	일반 도로	-	건설제1985-399호 (1985.9.17.)	
변경	중로	1	16	20~23.5	집산도로	1,400.5 (174)	대로3-5	대로1-2	일반 도로	-		선형변경 (구역내 확폭)
기정	중로	2	10	15~18	집산도로	472	중로1-13	중로1-16	일반 도로	선일 중학교	건설제1985-399호 (1985.9.17.)	
변경	중로	2	10	15~18	집산도로	472 (183)	중로1-13	중로1-16	일반 도로	선일 중학교		선형변경 (구역내 확폭)

주) ()는 정비구역내 연장임

-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 전 도로명	변경 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대로 3-5	대로 3-5	· 선형변경	·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선형변경(구역내 확폭)
중로 1-16	중로 1-16	· 선형변경	·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선형변경(구역내 확폭)
중로 2-10	중로 2-10	· 선형변경	·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선형변경(구역내 확폭)

4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

도면표시 번호	가 구 번 호	획 지		비 고
		위 치	면적(㎡)	
공동	1	선부동 967번지 일원	26,756.9	공동주택
공공	1	선부동 967번지 일원	1,162.0	공공시설부지 (기부채납)

5) 건축물의 주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건축선에 관한 계획

■ 공동주택용지

가구번호	위치	구분		계획내용
1	①	용도	허용	• 공동주택 중 아파트 (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)
			불허	• 부대시설 (주택법 제2조 제13호)
		건폐율	불허	• 복리시설 (주택법 제2조 제14호)
		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
			• 50% 이하	
			• 280% 이하	
		높이		• 37층 이하
		건축한계선		•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, 선부광장1로변 10m
				•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정비계획에 따르며, 보도형 전면공지에는 담장, 간판, 냉난방용 실외기 등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없음

- 주1) 「2030 안산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」 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기준용적률 230%, 향후 사업시행시 인센티브 항목을 적용할 경우 허용용적률은 최대 20%까지 부여하는 조건으로 상한용적률 280% 이하로 계획 수립
- 주2)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(5%), 지능형건축물 3등급(3%), 부설주차장 확보(12%)를 통한 20% 확보할 것
- 주3) 사업시행자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4조제4항에 의거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%를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,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공급할 경우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(300% 이하)까지 건축 가능
- 주4) 상한 용적률 산정시 공공시설 설치 비용의 건축비단가는 건축허가 시점 직전 조달청 ‘주요 시설 유형별 단위당 공사비’를 활용하여 평균 단위당 공사비를 산정할 것

■ 공공시설부지

가구번호	위치	구분		계획내용
1	①	용도	허용	• 「국토계획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“기반시설”로서 시행령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공·문화체육시설
			불허	• 「국토계획법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“공공시설”로서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시설
		건폐율	불허	• 「안산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15조의3 제6항에서 정하는 시설
			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
			•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(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)에 포함되는 시설	
		높이		• 50% 이하
		용적률		• 200% 이하
		높이		• 4층 이하

주) 건축면적 2,324㎡ 기준으로 그 이상으로 설치 계획할 것

12. 정비구역을 분할,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 : 해당사항 없음

13. 정비사업의 시행방법

재원조달계획	· 도시·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지침(국토교통부 제2013-224호) 제2절2-2-2 (5) (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)에 의거 해당사항 없음
시행방식	·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3조3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, 부대시설·복리시설 및 오피스텔(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함)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함
사업예정시기	· 정비구역 결정고시 후 4년 이내
준공계획	· 착공후 36개월

14. 기존건축물의 정비·개량에 관한 계획

구역면적(㎡)	위 치	정비개량계획(동)					비고
		합계	존치	개수	철거후신축	철거이주	
29,528.9	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67 일원	14	-	-	14	-	

15. 관련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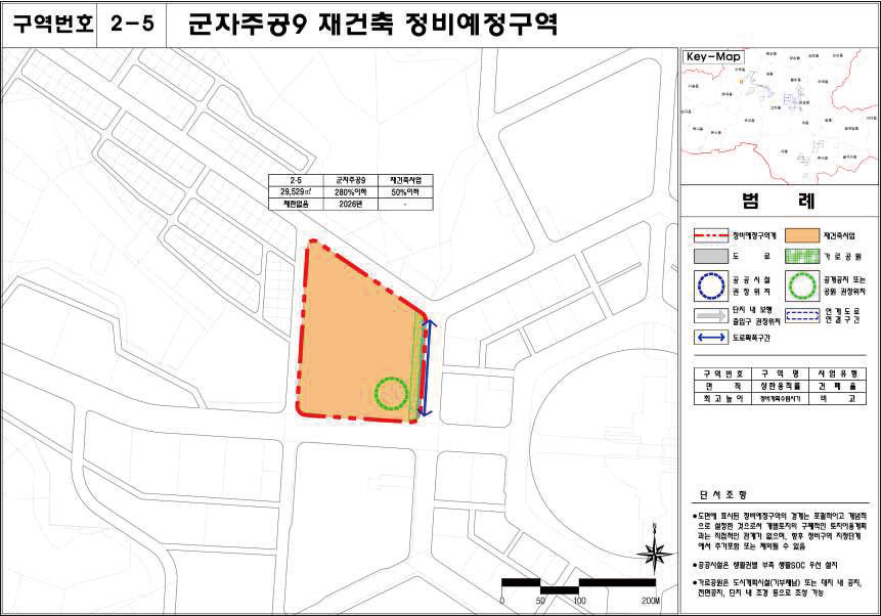
- 붙임1 : 정비예정구역도
- 붙임2 : 정비구역결정도
- 붙임3 : 토지이용계획도
- 붙임4 : 기반시설계획도
- 붙임5 : 정비계획결정도
- 붙임6 : 지형도면고시도

16. 관계도서 열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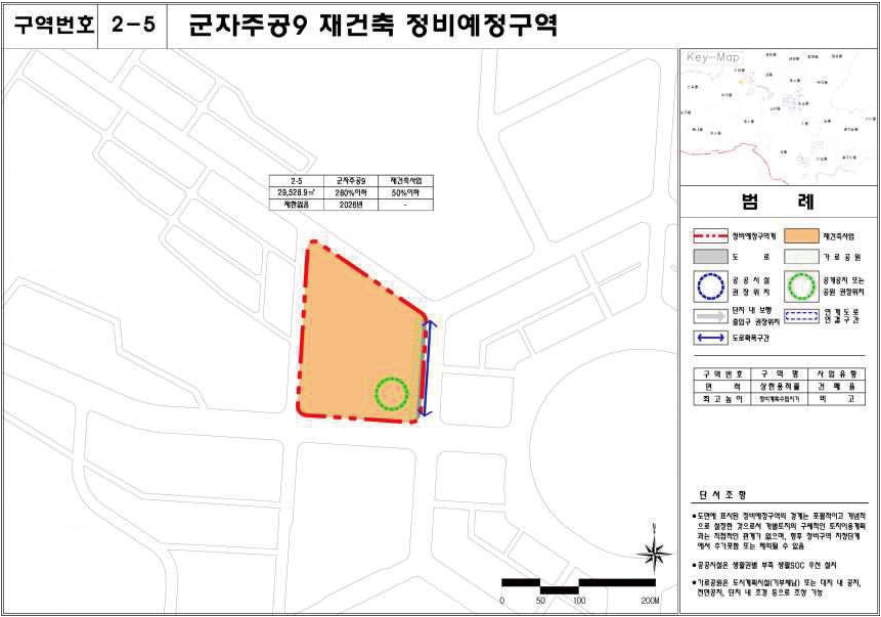
- 안산시청 주택과(☎031-369-1714)에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■ 붙임1 : 정비예정구역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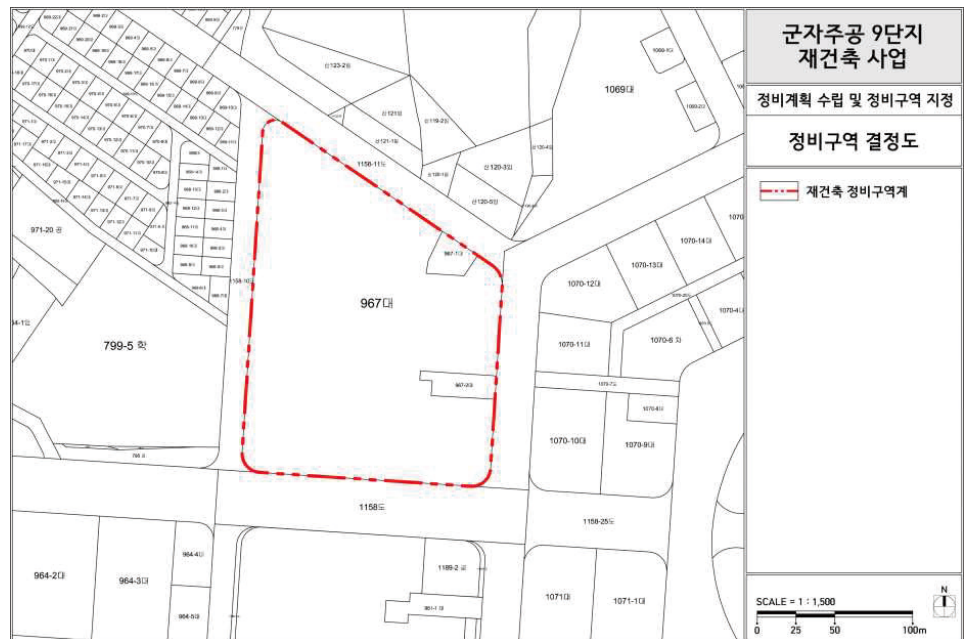
· 정비예정구역도(기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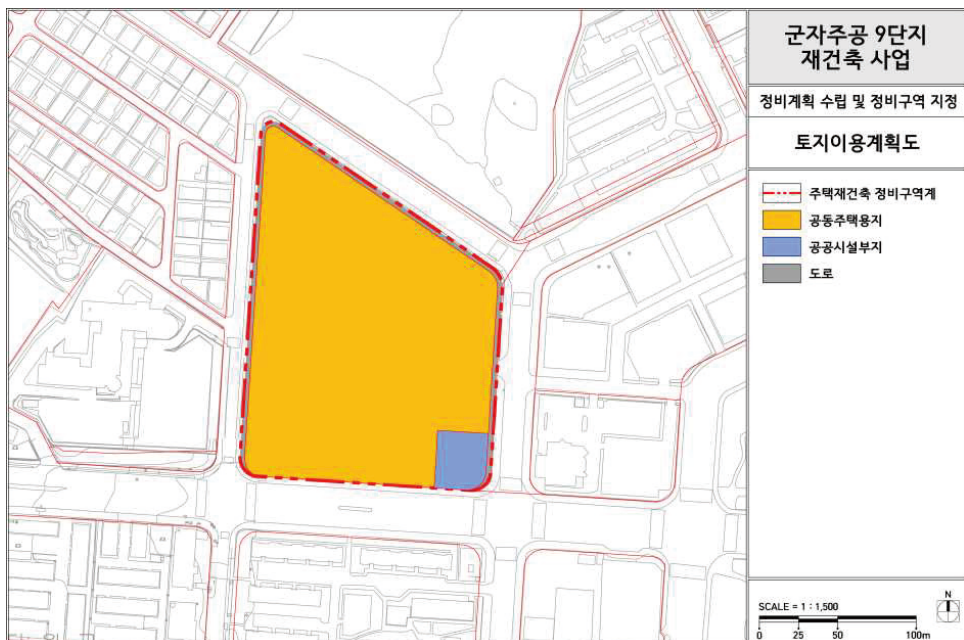
· 정비예정구역도(변경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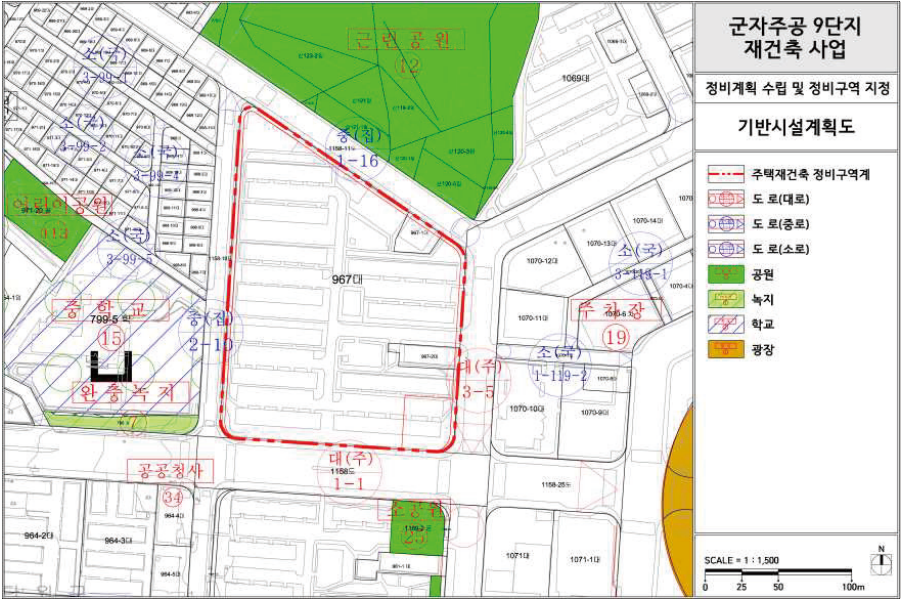
붙임2 : 정비구역결정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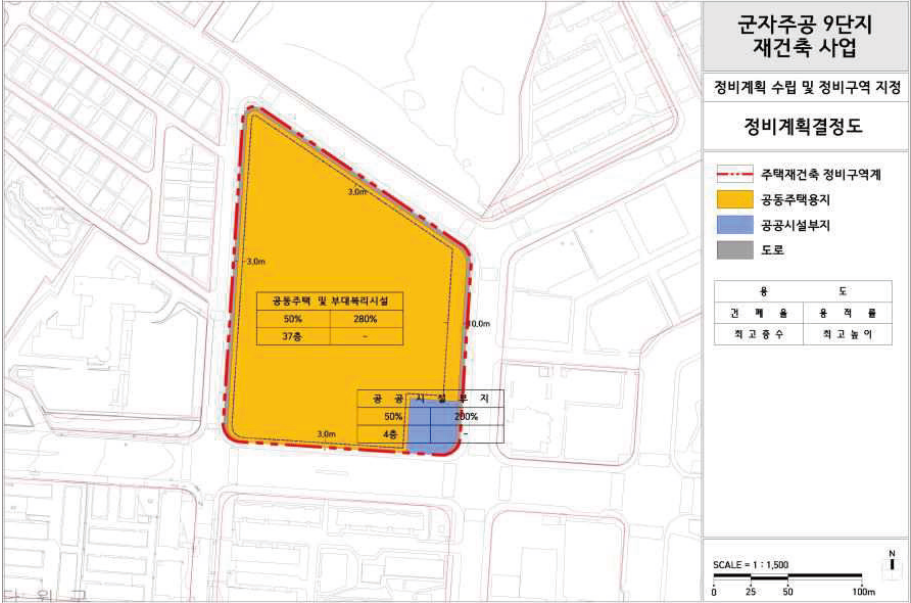
붙임3 : 토지이용계획도



붙임4 : 기반시설계획도



붙임5 : 정비계획결정도



■ 붙임6 : 지형도면고시도

군자주공 9단지 재건축 사업 지형도면고시도

